

산업안전 Q&A

Q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 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 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 업체에서 당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현장에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자재비와 설치비를 다 적용 받는 것인지, 일부 자재비와 설치비만 적용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2호에서는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재비와 설치비가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내에서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프레스를 설치할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발생 원인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에 있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A

저의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안전관리 실시 현장으로 (세대수 50세대 미만, 공사금액은 50억 미만) 착공은 3월에 했고 현재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법규에 저축되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정율 30%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전혀 지출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관리 및 추후 공정율에 맞추기 위해서 적정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채용시 건강진단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그 검사항목은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채용구비서류의 하나로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인 것이므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A